

『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2차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공동주택부지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는 지금 조속히 매각하여 공동주택보급을 활성화하고, 공무원 아파트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처분재산】

☐ 선산교리2지구 환지 매각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 2L(교리1384 <가지번>)
- 대 상 : 토지 42,376m²(12,819평)
- 기준가격 : 21,188,000천원(가감정액)

【취득재산】

<당 초>

☐ 공무원아파트 신축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(전용면적 60m²이하)
- 기준가격 : 14,200,000천원

<변 경>

□ 공무원아파트 매입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 2L(교리1384 <가지번>)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(전용면적 60m²이하)
- 기준가격 : 16,000,000천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제141회(2009. 4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매각, 신축으로 승인
- 제184회(2014. 2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변경 승인
- 제195회(2015. 4월) 임시회 시 2014. 10월 아파트분양사(대림)의 통보에 따라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무가 소멸되어 공무원 아파트 취득 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였으나,
- 이번 회기 시 교리2지구 환지를 매각·처분하고,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관내 아파트 신축,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시점에 지역의 공동주택보급을 활성화하고 선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지 처분 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지난 4월 결정된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변경되는 등 본 관리계획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